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학대 신고 범위 확대 등 》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52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21호)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75호)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57호)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98호)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7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9
------------------	---

1. 노인학대 신고 범위 확대(양문석의원안)	9
--------------------------------	---

2. 노인 급식 지원 강화(전진숙의원안)	13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유형에 노인 건강증진 시설 추가 (강명구·송기현의원안)	19
---	----

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의무적 확보를 법률로 명시(박희승의원안)	25
---	----

5. ‘노인의 날’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이현승의원안)	33
---	----

※ 참고 자료

1. 노인 건강·운동 관련 시설	24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역별 공급 현황(2019~2023)	32
--	----

I. 개요

1.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5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7.
- (3) 회 부 일 : 2024. 12.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2.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2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12. 31.
-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3.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25년에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음.

노화로 신체기능이 약화된 고령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의료소요 및 의료비 지출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령인구 의료비 증가는 개인의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됨.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과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지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노인들이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및 국가 차원의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6조제1항제5호 신설).

4.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35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폐업·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게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5.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9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14.

(3) 회 부 일 : 2025. 1.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6.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16.
- (3) 회 부 일 : 2025. 1.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에서는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중운동과 같은 노인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친화적인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많지 않고, 파크볼과 같이 혹서·혹한기에는 하기 힘든 운동이 노인 운동으로 보급되어 있어 노인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Ⅱ. 검토 의견

1. 노인학대 신고 범위 확대(양문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u>때에는</u>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 <u>경우나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u>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u>때에는</u>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u>경우나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u>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
- 이러한 가운데, 노인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2019년(5,243건) 대비 34.0% 증가한 7,025건에 이르고 있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노인학대 주의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

-
-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노인학대 발생 현황 (2019~2023) >

(단위: 명, %)

신고자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019~2023)
신고의무자(%)	877 (16.7)	939 (15.0)	860 (12.7)	1,125 (16.5)	1,044 (14.9)	19.0%
비신고의무자(%)	4,366 (83.3)	5,320 (85.0)	5,914 (87.3)	5,682 (83.5)	5,981 (85.1)	37.0%
합 계	5,243	6,259	6,774	6,807	7,025	34.0%

* 자료: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관련 입법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는 ‘아동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²⁾.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

- 보건복지부도 노인학대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학대인지 판단이 어려운 일반인의 경우 신고 후 학대 사례가 아

2) 참고로, 미국 연방법 「고령자 정의법(the Elder Justice Act of 2009)」과 일본 「고령자학대방지법」도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군에 대해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학대(의심)행위자 등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심적 부담으로 학대를 명확히 알게된 이후 신고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신고 범위로 확대한다면 사후 발생될 심적 부담 완화 등 신고 활성화로 학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개정시 고려되어야 하나, “학대 의심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한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1항을 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도 사회취약계층 학대 예방 차원에서 금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음.

2. 노인 급식 지원 강화(전진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노인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 단가를 설정하고, 급식지원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5(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나. 주요 검토사항

□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급식지원 시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³⁾.

□ 현행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수행되고 있음⁴⁾. 참고로,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이 2024년 12월 20일 개정되어 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바 있음⁵⁾.

3) 참고로,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2024.4.30.)

5)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시행 2026. 1. 1.]

<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등
급식 기관	경로식당(일일평균이용자 수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지역여건 고려시 이용자 20인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 주1회 이상 급식 가능)	밥, 국, 밑반찬, 죽 등 가정식·치료식(당뇨병, 고혈압) 등 제공
비용 징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무료, 그 외 실비	

* 자료: 「2025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하지만,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급식단가가 낮고⁶⁾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4년도 지역별 급식 단가 현황 >

(기준: 2024. 5. 31. 기준 / 단위: 원)

시 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울특별시	4,000~5,500	4,000~6,000
부산광역시	3,500~4,000	3,500~4,000
대구광역시	3,500	2,300~14,500
인천광역시	3,500	3,500
광주광역시	4,000	4,000
대전광역시	4,000	4,000
울산광역시	3,500	4,000~5,500

6) 「2022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급식단가는 지역아동센터·요양원 2,496원, 어린이집 1,900원, 초중고 3,046원, 군대 3,500원, 정부·공공기관 2,452원 등으로 조사되었음.

세종특별자치시	미운영	5,000
경기도	4,000	4,000~8,000
강원특별자치도	3,000~6,000	3,500~11,000
충청북도	3,500~5,000	2,500~9,500
충청남도	3,500~5,000	3,500~20,000
전북특별자치도	4,000~4,500	5,000~6,000
전라남도	5,500	5,500
경상북도	4,000	4,000
경상남도	3,300	2,500~15,000
제주특별자치도	5,500	5,500

* 도시락 단가는 지역별로 1일분 또는 3~5일분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 배달료 지원 등 구성이 다양하여 단가의 범위가 넓음

* 자료: 보건복지부

□ 노년기에 영양을 갖춘 식사가 가져다주는 신체적·정신적 이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초고령사회에서도 가급적 많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끔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⁷⁾는 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⁸⁾으로 되어 있어 보다 원만한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슈와 논점 제22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6. 12.)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 그 외, 현행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9)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정책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필요는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제1항 제2호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율 중인 급식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 조문 내용에서 ‘국가’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율 중인 급식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 조문 내용에서 ‘국가’는 제외될 필요 - 아울러 노인무료급식은 ▲인력(복지관 직원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 등) ▲ 조리 식사 장소(복지관 종교시설 등) ▲재원(지자체 예산 기부금품 등) ▲제공방식(단체급식)으로 운영되어, 아동 급식과 달리 단가 산정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제2항 및 제3항 삭제)
행정 안전부	◦ 해당 법률에 국가자치단체가 노인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대해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법률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재정자립도) ‘20년 50.4% → ‘24년 48.6%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20년 28.6조 → ‘24년 34.5조

9)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 재정부	◦ 사회 복지 성격의 노인장애안·아동 복지관 운영은 지자체 사무이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 또한 '05년 지방이양 * 영 [별표2]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재정과 함께 지방이양되어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 제외된 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 재정규율과 맞지 않게 되고 과도한 국가적 부담 초래
경상 북도	◦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필요 - 전국의 어르신이 동등하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노인여가복지시설 유형에 노인 건강증진 시설 추가

(강명구·송기헌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2건의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노인건강증진센터(강명구의원안) 또는 노인특화 체육시설(송기헌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강명구의원안	송기헌의원안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5. <u>노인건강증진센터: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에게 특화된 운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u>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5. <u>노인특화 체육시설: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갖추어 노인에게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2022년도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요양급여비용 102조 9,770억원 중 43조 2,348억원(42.0%)이 65세 이상 노인(전체 인구 중 17.4%)에게 지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3.2%에 불과하고, 평소 운동을 하는 비율은 52.8%에 지나지 않으며, 운동실천 노인 중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경우도 38.3%에 불과하였음.
-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이 ‘노인건강증진센터’ 또는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노인여가시설에 추가할 경우, 전문적인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 제공 및 운동·건강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9~2023)>

(단위: 개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노인복지관	391	398	357	366	438
경로당	66,737	67,316	67,211	68,180	68,792
노인교실	1,285	1,291	1,255	1,240	1,225
합 계	68,413	69,005	68,823	69,786	70,455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등 시설의 제공 서비스가 중복·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그 목적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교실의 경우에도 그 목적에 ‘노인건강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건강과 문화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져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증진 및 체육에 대한 특화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겠음.

< 개정안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간 비교 >

구 분	정 의
노인건강증진센터 (강명구의원안)	◦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에게 특화된 운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특화 체육시설 (송기현의원안)	◦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갖추어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그 외 참고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¹⁰⁾에 따라,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에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친화형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노인 체육 진흥 사업(2025)>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어르신 대상)	·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17개 시도 350여개소) ·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추진(15개 시도 21개 사업) * 예시) 경남 '빈집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충남 '생활체육 걷기' 사업, 전남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등	3,306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기존 11개소+신규 20개소) - 어르신 참여도가 높은 체육시설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13,6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의 신체활동, 건강관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과 기능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의 신체활동, 건강관리 환경 조성 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 ◦ 다만, 기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인증센터 등에서 노인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수행 중 - 추가로,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소), 백세건강운동교실 (건보공단), 생활체육교실(문체부) 등이 지원운영 중 -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별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현장 의 혼란을 유발 우려 ◦ 참고로, 노인여가시설은 지방이양사업이며, 문체부에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 육센터를 설치지원하고 있음.
문화체육 관광부	◦ 운동·건강관리 → 건강관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및 필요 시설에 대한 추진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획 재정부	◦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既지원중인 사업과 유사중복 -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의 경우 건강생활실천 등 노인건강관련 사업 수행 중

【참고1】	노인 건강운동 관련 시설 (보건복지부)
--------------	------------------------------

제공기관	주요내용
보건소 (‘24, 261개소)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 (내용) 지역사회 내 낙상·치매 예방 운동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 (장소) 보건소,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관 (‘24, 438개소)	- (근거) 「노인복지법」 * 건강생활 지원사업(대분류)의 3가지 소분류 사업(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중 2가지 이상 사업을 필수적으로 운영 - (내용) 인지기능 강화 체조 등
경로당 (‘24, 68,792개소)	- (근거) 「노인복지법」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예시로 건강운동(체조, 댄스, 웃음, 요가명상 등) 분야가 있으며, 시군구 지원을 통해 제공
사회서비스 등록기관 (‘24, 164개소)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 (내용)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건강생활 지원센터 (‘24, 146개소)	- (근거) 「지역보건법」 - (내용) 건강측정 후 건강교실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문체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4, 11개소)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 (내용) 파크골프·탁구게이트볼 등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과 건강측정·살·메디컬룸 등 건강증진 시설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 - (기능) 노인 특화 운동기구 설치, 건강측정부터 운동처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치
[문체부] 국민체육 인증센터 (‘24, 76개소)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 (내용) 만 11세 이상 모든 국민 체력측정(3등급), 체력증진교실 운영 및 맞춤형 운동처방 실시

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의무적 확보를 법률로 명시(박희승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u>
<u><신설></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u>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u>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u> 1. <u>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 2. <u>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 3.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 4.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 5. <u>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u>세부 기준,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방식·절차</u> -----

현행	개정안
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 ----- ----- ----- ----- ----- ----- -----.
1.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35조제6항-----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상(제34조¹¹⁾ 및 제35조¹²⁾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현황(2019~2023)>

(단위: 개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자치단체		114	112	115	112	122
민간	법인	1,354	1,364	1,354	1,368	1,389
	개인	4,075	4,266	4,519	4,670	4,758
합 계		5,543	5,742	5,988	6,150	6,269

* 자료: 보건복지부

- 11)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2)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5호¹³⁾ 및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후 략)

□ 참고로, 동 규정은 시설 인프라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장기요양제도 도입 초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장기임대(5년)을 허용하

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였으나,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한편, 2025년 1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높은 지가·건설비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요양시설 정원충족률(정원 대비 현원)은 전국 79.0%으로 공실이 존재하나, 수도권 중심으로 과소공급지역이 존재함(정원충족률: 서초구 92.7%, 용산구 95.9%, 강남구 83.7%).

-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 움직임에 대응하여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설의 빈번한 설치·폐업·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소규모 시설 난립 우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주거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규칙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신노년층의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도심 등 거주지 인근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건물 소유의무 완화 필요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현재 시행규칙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함. ◦ 초고령사회 진입 및 돌봄수요의 증가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요양시설 진입규제의 신축적·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바, 해당 규제 관련 현행 법령체계로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노인 복지 중앙회	◦ 개정안 제35조제3항제6호(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가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한국노인 장기요양 기관협회	◦ 개정안에서의 시행규칙 내용을 법률제정으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손해보험 협회	◦ 토지·건물 사용권 허용 시 부실운영,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요양시설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으나, 보험사 등 민간의 경우, 시니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프라(인력·자본력 등)를 바탕으로 오히려 장기적, 안정적으로 요양서비스 공급 및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우려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본금확보 의무부여, 관리·감독 강화 등 방안 마련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개정안과 같은 방안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2】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역별 공급 현황(2019~2023) (보건복지부)
--------------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체	지 자 체	민 간		전 체	지 자 체	민 간		전 체	지 자 체	민 간		전 체	지 자 체	민 간		전 체	지 자 체	민 간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합 계	554	114	134	405	572	112	134	426	588	115	134	459	610	112	138	460	629	122	139	478
서 울	514	34	91	389	512	32	87	393	511	32	85	394	502	34	86	382	488	35	86	367
부 산	114	1	90	23	115	1	92	22	119	1	94	24	119	1	92	26	122	1	93	28
대 구	252	0	53	199	260	0	55	205	266	0	55	211	265	0	57	208	266	0	60	206
인 천	398	1	46	351	428	1	48	379	467	1	48	418	485	1	52	432	500	1	59	440
광 주	95	0	50	45	94	0	49	45	97	0	50	47	99	0	49	50	101	0	49	52
대 전	128	0	35	93	136	0	36	100	144	0	36	108	147	0	40	107	156	0	41	115
울 산	50	2	24	24	50	2	23	25	49	2	20	27	55	2	22	31	65	2	25	38
세 종	13	0	6	7	15	0	6	9	15	0	6	9	19	0	7	12	21	0	8	13
경 기	1812	10	229	153	1924	10	235	1679	2042	10	231	1801	2136	10	226	1900	2188	10	228	1950
강 원	320	9	85	226	330	9	87	234	331	10	85	236	327	10	84	233	332	10	86	236
충 북	295	6	59	230	304	5	62	237	315	5	62	248	325	6	62	257	315	6	62	247
충 남	310	5	73	232	318	5	75	238	334	5	77	252	359	4	82	273	368	5	84	279
전 북	230	6	86	138	241	6	84	151	248	7	83	158	252	6	87	159	251	8	86	157
전 남	314	28	101	185	313	28	100	185	312	28	101	183	313	25	101	187	325	30	103	192
경 북	395	6	155	234	414	6	155	253	424	6	154	264	426	6	157	263	431	6	154	271
경 남	238	5	125	108	242	5	124	113	245	6	121	118	251	5	120	126	271	6	121	144
제 주	65	1	46	18	66	2	46	18	69	2	46	21	70	2	44	24	69	2	44	23

5. ‘노인의 날’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이헌승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의 날’(10월 2일)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u>노인의 날</u> 로, 매년 10월을 <u>경로의 달</u> 로 한다.	제6조(<u>어르신</u> 의 날 등) ① ----- ----- ----- ----- <u>어르신</u> 의 날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재 노인과 관련된 법정 기념일(월)로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10월 2일) 외에 ‘경로의 달’(10월), ‘어버이날’(5월 8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효의 달’(10월) 등이 있음.

< 노인 관련 법정 기념일(월) >

근거법률	법정 기념일(월)
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의 날(10.2.) / 경로의 달(10월) / 어버이날(5.8.)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효의 달(10월)

- 1990년 제45차 유엔 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97년 8월 8일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10월 2일, 노인강령·경로현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노인의 날’(2024.10.2.) 행사 개요 >

- (목적)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감사 및 격려
- (참석자) 정부 및 국회, 대한노인회 관계자
- 주요내용
- 노인강령·경로현장 낭독, 대통령 축하, 축하 등
 - 100세 어르신께 대통령 내외 축하카드 및 청려장(장수지팡이) 증정
 - 노인의 날 유공자 포상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금번 개정안은 10월 2일 ‘노인의 날’ 명칭을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노인학대 발생 현황(2019~2023) >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노인학대 건수	5,243	6,259	6,774	6,807	7,025

* 자료: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특히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노인의 날’ 기념일의 취지(‘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와 행사목적(‘어르신에 대한 감사 및 격려’)에 부합하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¹⁴⁾.

< 노인·어르신의 사전적 의미 비교 >

노인	어르신
<u>나이</u>가 들어 늙은 사람. 늙구로, 기수, 노창, 백수, 숙기. 「비슷한말」 늙은이 「높임말」 노존(老尊)	「1」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네. 「2」 <u>아버지나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u> 이르는 말. =어르신네.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4)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노인’이라는 호칭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르신’이나 ‘시니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노인의날’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한다면 어떨까?, 뉴스포털1, 2022. 10. 4.)

□ 다만, 65세 이상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¹⁵⁾과 달리 ‘어르신’의 연령기준이 모호하고¹⁶⁾, 어르신의 개념에는 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이 아닌 사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경로의 날’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의 날로 개정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노인을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현행 법령이 없고 「노인복지법」 상 ‘노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념일 용어 변경은 법정합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의 날로 개정에 공감함 - 다만, 노인을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현행 법령이 없고 「노인복지법」 상 ‘노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념일 용어 변경은 법정합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등
행정 안전부	○ 개별 법률에 ‘노인의 날’에 대한 기념일 명칭 변경은 주관부처(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필요 ○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 외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도 중복 지정되어있는 기념일로, 「노인복지법」 개정 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 필요

15)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6) 어르신 연령기준 관련 조례 현황

65세 이상: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등

70세 이상: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